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12.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국정과제 추진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4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을 신설하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하부조직을 개편하면서 분장사무를 정비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개편 및 분장사무 정비(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제46조, 제48조의2)

- 1) 산업정책실에 산업공급망에 관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관등 1명을 신설하고, 산업혁신성장실의 명칭을 산업기반실로 명칭

을 변경하면서 엔지니어링 디자인 산업 관련 업무를 산업정책실로 이관하고, 에너지산업실의 명칭을 에너지정책실로 변경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 관련 국제협력 기능을 통상정책국으로 이관하며, 신통상전략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교섭실 및 통상정책국에 각각 정책관등 1명을 신설하는 등 통상교섭실과 통상정책국의 분장사무를 정비함.

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두었던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의 개편(안 제46조, 제49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제51조의5, 제52조제4항, 별표 6, 별표 7)

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4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감축하고, 1명(6급 1명)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시정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었던 한시정원 21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 중 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17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3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함.

3)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에 두었던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중 3명(5급 1명, 6급 2명)은 감축하고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함.

4)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내대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함.

5)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학 산업 육성을 위해 두었던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함.

다. 주요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 증원 및 통합활용정원제 계획에 따른 정원 감축 등(안 제46조, 제51조의7, 제52조제7항, 별표 3, 별표 4)

1)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 공급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2)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전문경력관 1명을 정규정원 1명(5급 1명)으로 전환함.

3)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 관련 국제협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상정책국에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

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함.

4) 원전수출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원전산업정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

5) 통상 분야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함.

6)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함.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3명”을 “4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44호 중 “진흥을”을 “산업공급망 강화를”로 하고, 같은 항 제45호 중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로 하며, 같은 항 제45호의3 및 제45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5호의5부터 제45호의12까지 및 제90호부터 제9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의3.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45의4.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45의5.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45의6.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45의7.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45의8.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5의9.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시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5의10.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5의11.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시행

45의12.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90.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91.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92.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93.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94. 디자인·브랜드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95.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96.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97.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98.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제13조의 제목 “(산업혁신성장실)”을 “(산업기반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업혁신성장실”을 “산업기반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0호

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4호 및 제25호 중 “디자인·브랜드·포장”을 각각 “포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에너지산업실)”을 “(에너지정책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에너지산업실”을 “에너지정책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6호 중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을 “에너지·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8호 및 제3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둔다”를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장”을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4호의2 및 제26호부터 제3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26.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집행

27.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분야와 관련된 각국 정책·조치 및 통상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응

28.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국 정책·조치, 국제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응

2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30.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31.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32. 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심의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3.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2명”을 각각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4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27.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28.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관련 국내산업 대책의 수립·시행

29. 통상협정 국내대책 이행상황의 점검·평가 및 보완대책의 수립·시행

30.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3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2. 국내 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3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이행
3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국제협약
3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수집
36.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37. 세계무역기구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38.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39.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 제에 관한 사항
40.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조정
41.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42.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43.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총괄
44.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업무
4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46.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47.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부터 제22

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8조제3항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후단 중 “81명을”을 “84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기반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제46조제3항 후단 중 “협의하여야”를 “협의해야”로 한다.

제48조의2제2항 전단 중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개 정책관등,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통상법무정책관”을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1개 정책관등,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3개 정책관등”으로 한다.

제49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1조의3 및 제5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5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7(원전전략기획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 및 홍보 대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
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 관리 및 수출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통계 관리
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 및 대외 협력 관련 사항

④ 원전전략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5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통상 분야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별표 3 중 총계 “935”를 “958”로 하고, 일반직 계 “924”를 “94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29”를 “32”로, 3급 또는 4급 이하 “873”을 “893”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90”을 “3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90”을 “3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83”을 “380”으로 하고, 전문경력관 “1”을 삭제한다.

별표 5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상정책국 1개 과	0명
---------------	----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

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6]

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51조의6제4항 및 제51조의7제4항 관련)

1. 미래자동차산업과(존속기한: 2023년 10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4급 이하	2

2. 원전전략기획관(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별표 7]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52조 관련)

1. 제52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2. 제52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3. 제52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4. 제52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또는 5급 이하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산업정책실) ①·② (생략)	제12조(산업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28. (생략)	1. ~ 28. (현행과 같음)
29. ~ 43. 삭제	
44.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44. ----- --- <u>산업공급망 강화를</u> --- -----
45. <u>소재·부품·장비산업</u>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45. <u>소재·부품·장비산업</u> 및 <u>산업공급망 강화</u> ----- ----- --
45의2. (생략)	45의2. (현행과 같음)
45의3. <u>소재·부품·장비산업</u>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45의3. <u>산업공급망</u> <u>안정품목의</u> <u>선정 및 관리</u>
45의4. <u>소재·부품·장비</u> 특별회계의 관리	45의4. <u>소재·부품·장비산업</u> <u>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u>
<신설>	45의5. <u>소재·부품·장비</u> 특별회계의 관리
<신설>	45의6. <u>소재·부품·장비</u>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신 설>	45의7.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 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 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사 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신 설>	45의8.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 련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 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 한 사항	<신 설>	91.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 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 성
<신 설>	45의9.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정책의 조 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92.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 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 교류 등 국제협력
<신 설>	45의10. 핵심 소재·부품·장 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 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93.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 립·시행
<신 설>	45의11. 핵심 소재·부품·장비 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시행	<신 설>	94. 디자인·브랜드 산업의 육 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 행
<신 설>	45의12. 소재·부품·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 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신 설>	95. 디자인·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46. ~ 89. (생 략)	46. ~ 89. (현행과 같음)	<신 설>	96.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 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 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 한 사항
<신 설>	90.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 (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신 설>	97.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신 설> 제13조(산업혁신성장실) ① 산업 혁신성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 략) 20.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 (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추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기술개발·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21.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22.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 교류 등 국제협력 23.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	98.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제13조(산업기반실) ① 산업기반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1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립·시행 24. 디자인·브랜드·포장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25. 디자인·브랜드·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26.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추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7.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28.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29. ~ 57. (생 략) 제14조(에너지산업실) ① 에너지산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5. (생 략) 3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및 에너지·산업 분	24. 포장 ----- ----- ----- 25. 포장 ----- ----- ----- <삭 제> <삭 제> <삭 제> 29. ~ 57. (현행과 같음) 제14조(에너지정책실) ① 에너지정책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5. (현행과 같음) 36. ----- ----- 에너지·산업 -----
--	--	--	--	--

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7. (생략) 38. <u>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u> 39. <u>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 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u> 40. ~ 98. (생략) 제15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신설> 15. ~ 25. (생략) 26.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와 관련한 관련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국내 관계 기	----- 37.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40. ~ 98. (현행과 같음) 제15조(통상정책국) ① -----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 ③ -----. 1. ~ 14. (현행과 같음) 14의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15. ~ 25. (현행과 같음) 26.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집행	<u>관과의 협조</u>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7. <u>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 신통상분야와 관련된 각국 정책 조치 및 통상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응</u> 28. <u>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국 정책 조치, 국제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대응</u> 2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30. <u>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u> 31. <u>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u> 32. <u>에너지·산업 분야의 청정 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심의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 33. <u>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u>
---	--	--	--

	<u>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u>			<u>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제17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제17조(통상교섭실) ① ----- ----- 3명-----.	<신 설>		32. <u>국내 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u>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3명----- -----.	<신 설>		33. <u>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이행</u>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신 설>		34. <u>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국제 협의</u>
1. ~ 5. 삭제	6.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35. <u>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수집</u>
6. ~ 25. (생략)	26. <u>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u>	<신 설>		36. <u>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신 설>	27.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	<신 설>		37. <u>세계무역기구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조정</u>
<신 설>	28. <u>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 관련 국내산업 대책의 수립·시행</u>	<신 설>		38. <u>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u>
<신 설>	29. <u>통상협정 국내대책 이행상황의 점검·평가 및 보완대책의 수립·시행</u>	<신 설>		39. <u>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u>
<신 설>	30. <u>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시행</u>	<신 설>		40. <u>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조정</u>
<신 설>	31. <u>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u>	<신 설>		41. <u>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의 총괄·조정</u>

<u><신 설></u>	<u>42.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회 관련 업무</u>
<u><신 설></u>	<u>43.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 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총괄</u>
<u><신 설></u>	<u>44.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 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 소기구에 대한 대응 업무</u>
<u><신 설></u>	<u>4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u>
<u><신 설></u>	<u>46.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47.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 지,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부터 제22호까지, 제24호 및 제25호부터 제47호까지의 업 무와 관련한 산업계의 의견수 렴과 국내외 관계기관의 협조</u>
제18조(무역투자실) ①·② (생 략)	제18조(무역투자실)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③ ----- --.
1. ~ 33. (생 략)	1. ~ 33. (현행과 같음)
34. 세계무역기구(WTO)의 도	<삭 제>

<u>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 간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 TA) 및 이와 유사한 범위·수 준의 지역무역협정(RTA) 등 통상교섭·이행에 따른 협정 (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의 국내대책 관련 대내외 경제 환경의 점검 및 국내대책의 수립</u>	
<u>35.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지원</u>	<삭 제>
<u>36.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의 지원 및 이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협의·조정</u>	<삭 제>
<u>37.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운용</u>	<삭 제>
<u>38. 통상협정 활용과 관련된 전 문인력 양성</u>	<삭 제>
<u>39.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 내대책의 수립과 관련된 국내 외 사례 및 관련 연구의 분석</u>	<삭 제>
<u>40.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국 내대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와의 협의 및 조정</u>	<삭 제>
<u>41.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업 종별·지역별 변화 분석 및</u>	<삭 제>

연구	
42.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피 해산업 지원방안의 수립 및 이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사후평가 등 국내보완대책의 총괄	<삭 제>
43. 국내대책 마련을 위한 통상 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분석	<삭 제>
44. 통상협정의 체결에 따른 제 도 개선 총괄 및 제도 변화에 따른 활용방안 지원	<삭 제>
45. 통상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제도 선진화전략의 연구 및 법령의 제정·개정과 관련된 사항	<삭 제>
46. 해외 제도개선 사례의 수집 및 분석	<삭 제>
47. ~ 51. 삭 제	
52. 통상협정의 내용과 국내 산 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삭 제>
53. 통상협정 관련 국내외 활용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54. 통상협정 관련 국내외 활용 지원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삭 제>
55. 제34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삭 제>

제52호부터 제54호까지의 업 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 과의 협의	
56. 그 밖에 통상협정의 국내대 책과 관련한 사항	<삭 제>
57. ~ 83. (생 략)	57. ~ 83. (현행과 같음)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46조(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 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공무 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 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1 명일,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 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 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 84 명을----- ----- ----- ----- ----- ----- -----.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 업혁신성장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 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무역투 자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 업기반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4급 1명,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2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관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 협의해야 -----.

제48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개 정책관등,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신통상질서전략실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통상법무정책관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 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략)

제49조(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둔다.

②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이 겸임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 통상정책국 및 통상정책국 1개 정책관등,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3개 정책관등 -----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3.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영

4.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5. 한·중, 한·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④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삭제

⑥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신통상질서전략실 및 정원) 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둔다.

② 신통상질서전략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통상법무정책관 각 1명을 둔다.

③ 실장, 신통상질서정책관 및 통상법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삭 제>

보한다.

④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세계무역기구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3.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4.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5.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조정
6.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7.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9.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국내 절차 총괄
10.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현안 대응 총괄

11.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이행

12. 국내 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1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국제 협의

1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수집

15.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총괄

16.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업무

17.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18.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19.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집행

20.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국내외 여론 분석

21.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관련 갈등 조정을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22.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관련 시민단체·이해단체 등의 동향 분석 및 대응

23.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자료 작성·발간 및 교육활동 지원

24.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관련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총괄

⑤ 신통상질서정책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법무정책관은 제4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 1명)은 외교부, 1

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⑨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소재부품장비협력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1명을 둔다.

<삭 제>

②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제12조제3항제44호, 제45호, 제45호의2부터 제45호의4까지, 제46호, 제47호, 제55호, 제56호 및 제56호의2부터 제56호의5까지의 사항과 제51조의3제3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재부품장비협력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제51조의3(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둔다.

②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핵심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 핵심 소재·부품·장비별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정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시행

7.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④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⑤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5(국내대책과) 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내대책과를 둔다.

② 국내대책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과장은 제18조제3항제39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국내대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 설>

<삭 제>

제51조의7(원전전략기획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 및 홍보 대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
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 관리 및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통계 관리
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 및 대외 협력 관련 사항

④ 원전전략기획관에 두는 공무원

제52조(한시정원) ① 삭 제	원의 한시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생 략)	제52조(한시정원)
③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④ 화학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통상 분야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둔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35	958	+23
·	·	·	
·	·	·	
일반직 계	924	947	+23
고위공무원단	29	32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873	893	+20
·	·	·	
·	·	·	

[별표 4]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90</u>	<u>386</u>	-4
일반직 계	<u>390</u>	<u>386</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83</u>	<u>380</u>	-3
전문경력관	<u>1</u>	<u><삭 제></u>	<u>-1</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9